

# 2020 장애인 생활체육지원사업 공모 신청 안내

## 1 공모사업분야 : 3개 사업유형

### 가. 2020년 서울특별시 장애인생활체육 지원사업

- 1) 교실형: 생활체육교실(장애유형, 생애주기, 수준운동교실), 및 동호인클럽 지원
  - 주 1회, 1시간, 6개월 이상 운영
  - 구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서울시 관내 등록단체
- 2) 대회형: 지역동호인대회(동호인대회, 어울림대회) 개최지원
  - 1일 1회(일회성 사업), 생활체육종목동호인대회 및 장애인, 비장애인참가 어울림대회 개최
  - 가맹단체, 구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지 않은 지역 내 서울시 관내 등록단체
  - 2020 어울림풍선배구대회 공모
- 3)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 거점형 스포츠클럽
  - 지역형 스포츠클럽

## 2 지원범위

### 가. 공모예산: 총 4억 3,600만원(금 사억삼천육백만원)

#### 나. 지원기준(교실형)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규모	비고
시비	교실 및 동호인클럽	180,000,000원	개소별 250만원 기준 72개소	선정·교부
기금	교실	112,000,000원	개소별 250만원 기준 44개소	선정·교부
			개소별 200만원 기준 1개소	
	동호인클럽	54,000,000원	개소별 250만원 기준 20개소	
			개소별 200만원 기준 2개소	

#### 다. 지원기준(대회형)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규모	비고
시비	지역동호인대회	20,000,000원	개소별 1,000만원 기준 2개소 (동호인대회)	선정·교부
		50,000,000원	개소별 500만원 기준 10개소 (어울림대회)	
		10,000,000원	개소별 1,000만원 기준 1개소 (어울림풍선배구대회)	
기금	지역대회	10,000,000원	개소별 500만원 기준 2개소	

### 라. 지원범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자부담 필수, 교실형 5%, 대회형 10% 이상

### 3 사업신청대상

가. 사업신청 자격요건: 서울특별시 관내(소속) 사업장

- 1) 구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종목, 유형)
  - 2) 복지관, 장애유형 및 체육관련 단체 및 시설, 특수학교, 장애인등록(이용)단체 등
  - 3) 기타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개설 및 대회개최 계획 중인 서울시 관내(소속) 사업장
- ※ 보조금사업 수행을 위한 관내 등록단체(고유번호증 발급 등) 및 보조금 전용계좌를 별도 개설하여 운영가능 한 단체 등

나. 신청제외대상: 소모성 행사사업(단합회, 워크숍 등), 대회참가지원 등

### 4 공고 및 접수기간

가. 공고기간: 2020. 2. 5.(수) ~ 19.(수) / 홈페이지([www.ssad.or.kr](http://www.ssad.or.kr))

나. 접수기간: 2020. 2. 5.(수) ~ 19.(수) 16:00까지

※ 신청기한 준수, 기한초과 접수 시 재공모 후 검토: '20. 5. 이후(잔여예산에 따라 결정)

### 5 사업대상자 선정 및 결과통보

※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가. 신청검토: 2020. 2. 20.(목) ~ 3. 5.(목)

- 사업계획 검토 및 통합시스템 동호회 승인절차 추진(1차 검토)

나. 사업심사: 2020. 3. 11.(수)

-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검토결과 및 선정심사(2차 검토)

다. 선정검토: 2020. 3. 12.(목)

- 심사의견 반영을 통한 선정

라. 선정안내: 2020. 3. 13.(금)

- 홈페이지([www.sssad.or.kr](http://www.sssad.or.kr)) 및 선정단체 개별(공문) 공지

### 6 보조금 지원 및 운영

※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가. 교부금 신청: 2020. 3. 16.(월) ~ 3. 20.(금) 16:00까지

나. 정산교육: 2020. 3. 24.(화)

- 지원단체 대상 / 올림픽전시관 소강당(예정)

다. 교부금 지원: 2020. 3. 25.(수) ~ 27.(금) 한

- 1차 교부 예정 / 교부신청 초과기관 4월 중 교부

## 7 기타참고사항

- 가. 보조금사업 수행을 위한 단체명의로 사업전용 독립계좌를 별도 개설하여 운영하며, 자체부담금 및 타 기관 보조금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나.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단체는 관련 법에 의하여 보조금을 환수 당할 수 있음.

붙임: 2020 공모사업 분야 및 신청안내(생활체육팀) 1부.

# 2020 공모사업분야 및 신청안내(생활체육팀)

## 공모사업분야 총괄표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구성	사업내용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 클럽 지원  (교실형)	장애유형	①지체장애교실 ②지적장애교실 ③청각장애교실 ④시각장애교실 ⑤혼합 및 기타유형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체육 전 종목 대상 초보자 교실 시행</li> <li>- 교실 당 주1회, 6개월 이상 운영</li> <li>- 순수참가자 10명 이상(다수 참가 장애유형으로 사업구분)</li> <li>- 지도자당 수업참가자는 5명~7명 지도(권장) (1교실 당 복수 이상의 지도자 활용 가능하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참여 권고)</li> <li>- 지체장애 청소년대상 체육교실 운영 권장</li> <li>- 사회통합을 위해 어울림교실 권장 ※ 가족, 친구, 형제, 보호자, 활동보조 등</li> </ul>
	생애주기	⑥아동교실 ⑦청소년교실 ⑧직장인교실 ⑨여성교실 ⑩어르신교실	
	수중운동	⑪수중운동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종목: 다양한 수중운동교실운영 ※예시/ 아쿠아조깅, 수중어어로빅, 수중자전거, 패들보드 등</li> <li>- 참가유형: 모든 유형 장애인 참가가능</li> <li>- 순수참가자 10명 이상</li> </ul>
	동호인 클럽 운영	동호인클럽 운영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종목: 국내 장애인 가맹종목(30개), 인정종목(9개) 국제대회 종목(패럴림픽,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 ※대상종목 동호회를 우선으로 하되,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도 조정가능</li> <li>- 참가유형: 대상종목에 세부이벤트 개설되어 있는 장애유형</li> <li>- 순수참가자 15명 이상(중증장애인은 2배수 적용) *비장애인 포함 15명</li> <li>- 생활체육 종목별 동호인클럽 대상(생활체육통합시스템 등록 필수)</li> </ul>
지역동호인 대회 개최지원  (대회형)	동호인 대회	동호인대회 (종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맹단체 기준 / 종목별 안배(1개 종목만 운영)</li> <li>- 순수 참가자 50명 이상 (※ 운영진 별도)</li> <li>- 생활체육통합시스템 종목동호회 3개소 이상</li> <li>- 동호인 50명이상 개설 종목에 한함</li> <li>- 자부담 지원금 10% 이상 확보</li> </ul>
	어울림 대회	어울림대회 (비장애인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목별 안배 및 장애유형별 안배</li> <li>- 순수 참가자 100명 이상(※ 운영진 별도)</li> <li>- 비장애인 참가비율 30~50% 이내</li> <li>- 자부담 지원금 10% 이상 확보</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울림풍선배구대회』 운영</li> <li>- 사업형태: 공모</li> <li>- 지원금액: 1개소 1,000만원</li> </ul> </div>
공공스포츠 클럽 지원	-	거점형스포츠클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 3개 종목 이상 구성, 프로그램별 주2회, 6개월 이상 운영</li> <li>- 클럽별, 수준별, 장애유형별, 어울림 운영</li> <li>* 초급반에는 전문선수 등록자는 참여할 수 없음</li> </ul>
	-	지역형스포츠클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 3개 종목 이상 구성</li> <li>- 클럽별, 수준별, 장애유형별, 어울림 운영가능</li> <li>- 재가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촉진을 위한 종목별 클럽중심으로 운영</li> </ul>

[가맹종목 및 인정종목 현황]

○ 가맹종목

- 골볼, 농구, 댄스스포츠, 럭비, 론볼,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사격, 사이클, 수영, 스키, 아이스하키, 양궁, 역도, 유도, 요트, 육상, 조정, 축구, 컬링, 탁구, 태권도, 테니스, 펜싱, 골프, 당구, 승마, 노르딕스키

○ 인정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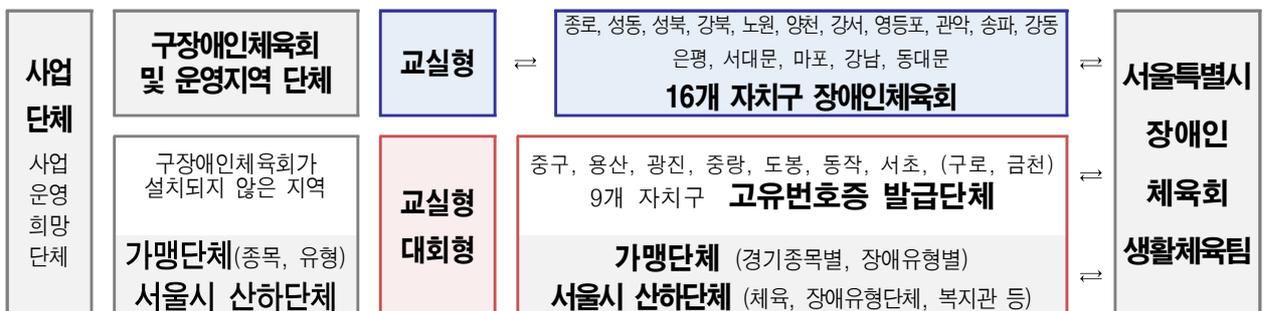
- 검도, 다트, 소프트볼, e-스포츠, 바둑, 게이트볼, 수상스키, 궁도, 술런

**사업대상** 장애인체육 프로그램 개설이나 대회개최를 계획 중인 서울시 관내(소속) 사업장

- 구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종목, 유형)
- 자치구 및 장애유형별 별 단체 및 시설 등
  - 복지관, 장애유형별 단체(시설), 체육관련 단체(시설), 특수학교 등
- 자치구 및 장애유형별 별 장애인등록(이용)단체 및 기관 등
- 생활체육 동호인클럽 등

**사업신청**

- 지원사업은 자치구장애인체육회 설립운영 지역과 미설립 지역으로 구분하여 진행
  - ※ 지정사업 및 일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업무협약 단체, 장애유형별 단체는 별도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음
  - ▶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등록소재지 기준으로 구분하여 신청
- 구장애인체육회 설립 운영지역
  - ▶ 지역 내 단체는 자치구장애인체육회를 통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 구장애인체육회 미설립 지역(구장애인체육회가 없는 자치구 소재 단체) 및 가맹단체(종목별, 장애유형별), 서울시 산하기관 등
  - ▶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발급단체가 사업계획서 직접 제출



※ 구로구, 금천구의 경우는 구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의 요청에 따라 서울시장장애인체육회에 직접 신청

## 신청방법

- 사업계획작성: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자료실 양식 다운로드  
[홈페이지 <http://www.ssad.or.kr> ⇒ 통합자료실 ⇒ 문서자료]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공지	2019 서울특별시장애대회 실행계획서 작성양식	전문체육팀	2019.04.24	664
공지	2019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원사업 공모 신청 양식	생활체육팀	2019.02.01	467
공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생활체육팀	2017.01.24	2,850
73	2019 생활체육지원사업(교실형,대회형) 정선 및 결과보고서 작성...	생활체육팀	2019.09.16	137

- 제출기간: **2020. 2. 5.(수) ~ 2. 19.(수) 16:00 까지 접수**  
※ 지정시간 내 발송완료 문서에 한하여 검토하며, 기간 외 접수문서는 검토 제외
- 제출방법: 지정담당자 이메일 제출(구장체 설립지역 자치구는 필히 구장체 담당자 접수 요망)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및 구장애인체육회 지정담당자 이메일 발송 또는 방문접수  
- 공문 및 계획서 내 신청사업 작성오류로 인한 선정제외 방지를 위해 다음 지정제목으로 사업신청메일 발송요망  
제목: **[공모신청] 소재지역(고유번호증 기준) 단체명 - 장애유형 - 종목명 - 사업명**  
예) 장애유형교실: [공모신청] 자치구명-단위사업(사업구성)-단체명-장애유형-종목명  
생애주기교실: [공모신청] 노원구-생애주기교실(노인)-시각장애인복지관 시각-커리링(뉴스포츠)  
동호인클럽: [공모신청] 종로구-동호인클럽-뉴스포츠동호회 - 청각 - 스포츠스태킹  
예) 동호인대회: [공모신청] ○○구 - 0000시설/학교 - 종목명 - 동호인대회  
어울림대회: [공모신청] ○○구 - 0000시설/학교 - 종목명 - 어울림대회  
어울림대회: [공모신청] ○○구 - 00구장애인체육회 - 어울림풍선배구대회  
※ 기타 접수(우편, 팩스 등)는 일체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1) 공문 - 사업계획서 제출공문, 반드시 직인 날인, 시행일자 기준 발송
  - 2) 사업계획서 (지정양식 및 첨부서류)
    - ① 신청기관 고유번호증 사본 (자치구장애인체육회 미설립 자치구 단체기준)
    - ② 2018, 2019년 기 운영단체는 용품관리대장 (해당단체)
    - ③ 기타 증빙자료 (지도자 자격사본 등) 외
    - ④ 회원명부
    - ⑤ 동호인클럽은 생활체육통합정보센터 가입신청서 ※ 동호인클럽 지원사업 신청의 경우

### 3) 기타보조금(자부담)재정확인서류

- 별도협의: 신청기관, 중앙단체, 구청 보조금결정 관련자료, 총회 및 사업승인 예산서 등
- ※ 자체부담 및 기타보조금 또한 정산증빙자료를 보조금 정산기준 제출('18년부터 적용)
- 자체부담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조금집행지침에 따라 전용카드발급 및 계좌이체 집행추진  
미제출 시 사업평가에 반영하여 차기년도 지원 보조금이 감액될 수 있음

#### ○ 사업신청 절차 및 방법

- 자치구장애인체육회 설립지역: 해당지역 자치구장애인체육회에 제출

자치구명	단체명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
강동구	강동구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김진욱	429-5203	jjinwook57@nate.com
		담 당	유희주	429-5203	gmlwnslgkkgk@naver.com
강남구	강남구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양기식	451-3315	-
		사무팀장	임동용		dasol69@hanmail.net
강북구	강북구장애인체육회	사무팀장	손경희	070-7747-2833	gbsad2016@naver.com
		담 당	이송희		
강서구	강서구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해무	2658-1998	hmlee678@hanmail.net
관악구	관악구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대섭	867-9676	powerbox365@naver.com
		사무실장	양호성	867-9676	98pym@naver.com
노원구	노원구장애인체육회	담 당	김문정	935-9976	nsad7979@hanmail.net
동대문구	동대문구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유상희	070-4488-5419	esee2000@nate.com
성동구	성동구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황춘덕	070-8872-2525	sdsad2015@naver.com
성북구	성북구장애인체육회	담 당	박근호	942-7976	ghgk88@naver.com
송파구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진원용	070-4267-2911	jimbaksa@nate.com
양천구	양천구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계택	2647-3842	hoe3842@hanmail.net
영등포구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마명주	832-3139	ysad7979@hanmail.net
은평구	은평구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김승연	356-6996	belina777@naver.com
종로구	종로구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박선영	6395-7071	jgsad@naver.com
서대문구	서대문구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진보경	395-4566	sdmsad@naver.com
마포구	마포구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박사희	306-9600	sahee@purmehospital.org
		사무팀장	김덕원		maposad@hanmail.net

- 자치구장애인체육회 미 설립지역 및 가맹단체: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 직접 제출

주소지	사무실 연락처	담당자	이메일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종합운동장 내	02-2202-2525 (내선 208) 070-4164-8102	생활체육팀 조원홍 주임	ssad2525@ssad.or.kr

- ※ 구로구, 금천구의 경우는 미 설립지역으로 분류하여 개별접수 진행
  - 2020년도에 한하며, 2021년도부터는 자치구장애인체육회에서 접수 진행

#### ○ 지원방법: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서 심사에 선정

## 검토사항

- 계획서 제출기간(지정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업검토 대상에서 제외
- 생활체육팀 지정담당자 이외 부서 및 타 사업담당자를 경유하여 제출할 경우 검토 제외
- 사업신청 공문은 반드시 시행번호 및 시행일자 기준 발송해야 하며, 단체직인 날인필수
- 교실 및 동호인클럽 지원사업 참가자는 생활체육통합시스템에 의거 동일종목 중복참여 제한
- 사업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 **사업접수(절차) 및 제출서류에 대한 미비로 선정오류(제외) 발생 시 책임 불가**

##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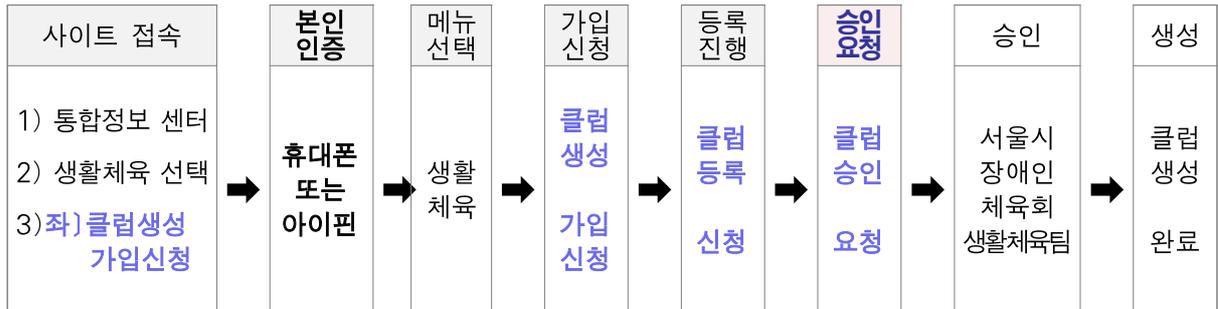
- 공모단체 신청자격에 준하여 다수 사업 신청가능, 단위사업별 종목 및 참가자 중복 불가
- 사업방침, 기간 및 횟수를 준수해야 하며, 단위사업별 지원 예산기준 변경 불가
- 자부담예산도 보조금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집행절차를 이행하도록 권유
- ※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지원 외 항목은 자부담처리, 보조금 인정 불가항목은 관련 조례 및 지침에 의거 자부담 불인정

## 기타 안내

- 사업선정단체 미달의 경우 재공모 실시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팀 담당자 문의
- ※ 생활체육팀 조원홍 주임(070-4164-8102)

## 동호회(클럽) 개설 안내

-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정보센터 <http://total.koreanpc.kr/regist/index/c102.do> 접속
- 신청사업 동호회(클럽)개설 및 승인요청: **2020. 2. 19.(수)까지**



## 동호회(클럽) 승인

- 개설된 동호회는 **사업계획서** 및 **동호회 등록 신청서** 제출에 따라 **일괄승인**  
→ **2020. 2. 20.(목) 이후**
- ※ 전국체전 동호인부 선수등록을 위한 동호회는 반드시 지원사업과 별개로 별도 협의

## 동호회(클럽) 참가자 가입

- 동호회 회원은 사업선정 및 보조금 교부 이전까지 신청인원 가입완료  
→ **2020. 3. 13.(금) 까지**
- ※ 전국체전 동일종목 참가회원은 생활체육지원사업 동호회에 가입불가(시스템 분리체계에 의거)

# 생활체육 교실형사업 지원기준 및 항목

## 1. 생활체육교실(장애유형, 생애주기, 수중운동교실) 지원

### 가. 사업내용

- 사업기간: 3월 ~ 10월(※ 운영기간: 4월 ~ 9월)
- 운영기준: 주 1회(1일 1시간 이상 운영), 6개월 이상 운영
- 주최기관: 구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장애인단체 및 기관 등
- 지원사항: 수당(지도자, 운영요원), 물품구입비, 장소임차비, 홍보비 등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 **엑셀양식포함 별도공지**

### 나. 지원기준

세부사업	사업구성	사업내용
장애유형	①지체장애교실 ②지적장애교실 ③청각장애교실 ④시각장애교실 ⑤혼합 및 기타유형교실	- 생활체육 전 종목 대상 초보자 교실 시행 - 교실 당 주1회, 6개월 이상 운영 - 순수참가자 10명 이상(다수 참가 장애유형으로 사업구분) - 지도자당 수업참가자는 5명~7명 지도(권장) (1교실 당 복수 이상의 지도자 활용 가능하며,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 참여 권고) - 지체장애 청소년대상 체육교실 운영 권장 - 사회통합을 위해 어울림교실 권장 ※ 가족, 친구, 형제, 보호자, 활동보조 등
생애주기	⑥아동교실 ⑦청소년교실 ⑧직장인교실 ⑨여성교실 ⑩어르신교실	
수중운동	⑪수중운동교실	
		- 대상종목: 다양한 수중운동교실운영 ※ 아쿠아조깅, 수중에어로빅, 수중자전거 등

### 다. 지원항목

목	세목	항목	금 액	지원내용	비고	
사업비	일 반 수용비	지도자 수당	일 100,000원 이내	1일 기준 / 수어통역사 동 기준 적용 ※ 지도자자격증 반드시 첨부. 심판자격증 인정불가		
			일 50,000원 이내	1일 기준/지도자, 운영기관 소속직원 수당 지급 시 ※ 소속 직원(지도자)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대상자의 주중 근무시간(09시~18시) 이외의 시간과 주말 등 가능		
		운영요원 수당	일 30,000원 이내	1일 기준 - 자격증 인정불가 지도자는 운영요원 수당 적용 - <b>지원예산기준 50% 이상 편성 불가</b>		
		운동용품	실 비	공동사용 소모성 용품 지원, 개인용품 불가 ※ <b>용품 개별단가 50만원 초과 시 검토불가</b>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대상자에 한하여 개인용품 지원가능 (1인당 단가10만원 이하 보급형 수준 용품 지원)		
		홍보물 위탁정산수수료	실 비 실 비	현수막, 팸플렛, 포스터 등 ※ 현수막 필수제작 회계정산 위탁정산 비용	필수	
	임차료	시설이용료	실 비	장소 임차비 및 입장료		
		운동용품	실 비	용기구·장비 임차비		
	기 타 운영비	의료약품	실 비	소모성 의료약품 구입 ※ <b>구급함 배치 필수</b>		
	업 무 추진비	사 업 추진비	간식, 음료 등	개소 당 10만원 이하	간식(음료 등)에 한함, 운영기간 중 참가자 지원 ※ 식사금지, <b>사업종료 후 집행 불가</b>	

## 라. 사업신청 준수사항

- 순수참가인원 10명 이상, 신규인원 구성
  - ※ 사업선정 후 생활체육통합통합시스템 등록(정산교육 시 별도안내)
- 실제 실행일정과 유사한 계획서 작성, 교육환경의 적합성 정도(장애인편의시설 사진첨부)
- ※ **지원예산 대비 자치구 및 운영기관 자부담 예산 확보**
  - 현수막 제작, 응급상황대비 구급상자 및 소모성 약품구입, 상해보험가입, 단체복제작 등 활용
  - 자부담 사용 시 보조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증빙서류 제출

### 1) 생활체육교실은 신규참여자 참가대상 교실

- 참가자 모집방법 및 참가자 명단 성실히 작성 이행
  - 교실운영 최소인원: 10명 ※ 중증장애인은 선정 시 참가자 가점적용, 보조요원 필수배치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어울림교실은 비장애인 참여 가능)
  - **신규참여자 반드시 포함**, 참여자 명단제출 (엑셀양식 별도, 신규회원은 반드시 신규명시)
- ※ 신규: 전년도('19년) **동일 종목** 교실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인원
  - 예) '18년 교실사업에 참가하고 '19년에 개인사정으로 불참한 경우 → **20년 신규참가자**
  - '19년 신규로 체육교실에 참가하고 올해도 계속 참가하는 대상자는 **신규 참가자가 아님**
- **동일종목 동호인클럽, 교실 중복 참여불가** 예) 동일인이 수영교실, 수영동호회 중복 참여불가
- **교실 및 동호인클럽 참여자 명단관리를 통해 중복수혜 및 허위등록 예방**
  - ※ 참여자 무작위 연락, 현장 암행점검 등을 통한 사업관리(국민체육진흥공단 등)

### 2) 운영요원 배치: 지도자, 보조지도자 구분, 자격증명서 첨부

- **지도자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우선배치** (배치확인서, 수업확인기록부 제출)
  - ▷ 지도자 수당지급 대상자(보조금): 1회 기준 10만원이내 일비 지급 ※**수어통역사 동 기준 적용**
  - 종목 공인자격증(문화체육관광부 발급) 소지자: 전문스포츠, 생활체육스포츠, 장애인스포츠 등
  - 중앙경기단체 자격증소지자(공인종목 이외 자격증 별도협의), 체육지도자(교사)자격증(공인기준)
  - 기타 **심판자격증, 강습회 수료증(수료확인서)** 소지자 **'보조금 지도자 수당'항목 지급제외**
- ※ 운영기관 소속 직원에게 지도자수당 지급 불가
  - 단, 사무처, 운영기관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정규근무시간의 범위를 벗어난 시간(평일 18시 이후, 주말 등)에는 보조금으로 지도자수당 지급가능(증빙서류: 해당자 3개월 급여명세서)

### 3) 용품구입 인정범위

- 생활체육교실: 라켓류, 안전용품, 구기류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모성 용품
  - ※ 행복나눔교실을 제외한 모든 교실 및 동호인클럽은 개인용품(피복류) 지급 불가
- **용품(개별) 단가 50만원 초과하는 자산취득성 물품 지원불가** ※ **사전협의 필수**
- **용품 목록 및 소모품 현황대장 비치 필수**
  - ※ '18 ~ '19년 기 지원 단체 연속지원 시 2년간 용품관리 대장 첨부 필수

### 4)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체계 구축 필수 - 상해보험, 구급함, 응급대피매뉴얼 등

- ※ '20년 신규 참가단체는 구급함 반드시 예산항목으로 구비 (보조금: 기타운영비 항목)

### 5)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신분증 및 복지카드 보완 철저(생년월일 외 주민번호 공개불가)

## 2. 생활체육 동호인클럽 지원

### 가. 사업내용

- 사업기간: 3월 ~ 10월 (※ 운영기간: 4월 ~ 9월)
- 사업형태: 구장애인체육회 및 운영단체 예산교부
- 운영기준: 주 1회(1일 1시간 이상 운영), 6개월 이상 운영  
\* 순수 생활체육동호인 대상으로, 전문선수 등록자가 포함된 동호인클럽은 지원 불가
- 주최기관: 구장애인체육회, 서울지역 내 동호인클럽
- 지원사항: 수당(클럽매니저), 물품구입비, 장소임차비, 홍보비 등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 **엑셀양식포함 별도공지**

### 나. 지원기준

세부사업	사업구성	사업내용
동호인 클럽 운영	동호인클럽 운영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종목: 국내 장애인 가맹종목(30개), 인정종목(9개) 국제대회 종목(패럴림픽,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 ※대상종목 동호회를 우선으로 하되,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도 조정 가능</li> <li>- 참가유형: 대상종목에 세부이벤트 개설되어 있는 장애유형</li> <li>- 동호회 구성인원 15명 이상(중증장애인은 2배수 적용) * 비장애인 포함</li> <li>- 순수 생활체육동호인 대상(생활체육통합시스템 등록 필수) ※전문선수 등록자가 포함된 동호회 지원 제외</li> <li>- 공공스포츠클럽 내 동호회 중복 지원 불가</li> </ul>

### 다. 지원항목

목	세목	항목	금 액	지원내용	비고
운영비	일 반 수용비	클럽매니저 수당	월 150,000원	지원기간 월별 정액지원	
		*운영요원 수당	일 30,000원 이내	* 운영기관 소속직원 등 1일 기준(대회개최시)	
		운동용품	실 비	공동사용 소모성 용품 지원, 개인용품 불가 ※ <b>용품 개별단가 50만원 초과 시 검토불가</b>	
		홍보물	실 비	현수막, 팸플릿, 포스터 등	필수
	공공요금 및 제세	*시상품 제작	실 비	* 메달, 트로피 등(시상금으로는 편성 불가) 지원금의 30% 이내(대회개최시)	
		*보험가입	실 비	* 상해보험 가입(기금 또는 자부담 의무편성) (대회개최시)	
		*우편요금	실 비	* 초청장 등 우편물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대회개최시)	
	임차료	시설이용료	실 비	장소 임차비, 입장료 및 사용료 등	
		운동용품	실 비	용기구·장비 임차비	
	기 타 운영비	의료약품	실 비	소모성 의료약품 구입	
업 무 추진비	사 업 추진비	간식, 음료 등	개소 당 10만원 이하	간식(음료 등)에 한함, 운영기간 중 참가자 지원 ※ 식사금지, 사업종료 후 집행 불가	

**지원사업 참가 동호회는 '생활체육통합정보센터' 동호회 개설 후 사업계획서 제출 시 동호인클럽 가입신청서 포함 제출 (선정 심사반영)**

## 라. 사업신청 준수사항

- 동호회 구성인원 15명 이상 ※ 신청사업 동호인클럽 개설 및 승인요청
- 실제 실행일정과 유사한 계획서 작성, 교육환경의 적합성 정도(장애인편의시설 사진첨부)

### ※ 지원예산 대비 자치구 및 운영기관 자부담 예산 확보

- 현수막 제작, 응급상황대비 구급상자 및 소모성약품 구입, 상해보험가입, 단체복제작 등 활용
- 자부담 사용 시 보조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증빙서류 제출

### 1) 전국체전 종목 동호회는 '20년 전국체전 선발전 및 대회참가인원 구분

- 참가자 모집방법 및 참가자 명단 성실히 작성 이행
  - 사업운영 최소인원: 10명 ※ 중증장애인은 선정 시 참가자 가점적용, 보조요원 필수배치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어울림교실은 비장애인 참여 가능)
  - 참여자 명단 (엑셀양식 별도 제출)

· 참가회원 중 '19년 전국체전(하계) 선수등록(참가 시도 / 유형) 여부 반드시 명시

※ 신규회원은 신규 명시 - 전년도 동일 종목 참가여부, 교실 참가자기준과 동일

- 동일종목 동호인클럽, 교실 중복 참여불가 예) 동일인이 수영교실, 수영동호회 중복 참여불가
- 1인 1개 동호회 등록제, 동호회 중복참여 제한 ※ 하계장애인체전종목 이외 종목 별도협의
  -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통합정보센터 동호회 등록자 타 동호회 명단 등록 불허지침
- 교실 및 동호인클럽 참여자 명단관리를 통해 중복수혜 및 허위등록 예방
  - ※ 참여자 무작위 연락, 현장 압행점검 등을 통한 사업관리(국민체육진흥공단 등)

### 2) 운영요원 배치: 지도자, 보조지도자 구분, 자격증명서 첨부

- 지도자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우선배치
- 매니저는 회원관리, 전산 및 정산업무 등 동호회 관리역할이 가능한 인력으로 선정
  - 매니저수당 지급 시 매월 1회 수당 지급준수
  - 매니저 임명서류 별도제출(수당지급 매니저 허위지재 및 임의변경 불가, 반드시 변경현황 수시 보고)
    - ※ 소득세 공제절차 이행지침으로 관련절차 이행이 어려운 단체는 1회 2개월 이상 금액 지급불가

### 3) 용품구입 인정범위

- 동호인클럽: 소모성 공동용품(셔틀콕 등) / 개인용품 지급 및 양도 불가
  - ※ 모든 교실 및 동호인클럽 개인용품(피복류) 지급 불가
- 용품(개별) 단가 50만원 초과하는 자산취득성 물품 지원불가 ※ 사전협의 필수
- 용품 목록 및 소모품 현황대장 비치 필수
  - ※ '18 ~ '19년 기 지원 단체 연속지원 시 2년간 용품관리 대장 첨부 필수

### 4)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체계 구축 필수 - 상해보험, 구급함, 응급대피매뉴얼 등

※ '20년 신규 참가단체는 구급함 반드시 예산항목으로 구비 (보조금: 기타운영비 항목)

### 5)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신분증 및 복지카드 보완 철저(생년월일 외 주민번호 공개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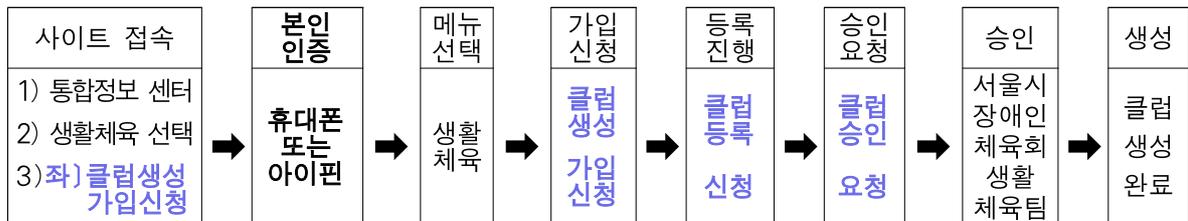
※ 2020년 생활체육통합정보센터 동호인클럽 등록안내 ※ 지원사업 신청단체 일괄해당

1) 동호인클럽 등록 시 주의사항

- ① 클럽등록에 있어 신규등록은 기준 충족 시 즉시, 재등록은 매년 정해진 기한까지 등록함을 원칙 (※ 통합시스템 관리업체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관리체계 확정에 따라 변경하여 공지)
- ② 클럽현황 작성 시 클럽 회원에 지도자, 비장애인 등록 가능(운영요원 제외)
- ③ 가맹경기단체에서 임의로 조직된 클럽이나 가맹단체명을 사용하는 클럽은 생활체육 동호인 등록분야 제외 ※ 전국체전 참가와 관련된 경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요망
  - 클럽은 고유번호증을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시 비영리기관 인정
  - 공문접수 시 보내는 클럽 명 또는 자치구장애인체육회에서 일괄 접수하여 신청 가맹단체 및 종목단체 접수불가 예) 서울○○협회, 서울○○연맹은 접수불가
- ④ 제출서류인원과 정보센터 홈페이지인원이 불일치 경우 다수발생(담당 클럽매니저 정기확인요망)
  - ※ 지원사업 승인평가 시 통합정보시스템 실명제 등록인원을 클럽회원으로 간주함
  - 전국체전 동일종목 참가회원은 생활체육지원사업 동호회에 가입불가(시스템 분리체계에 의거)
- ⑤ 클럽 이중등록 불가 - 1인 동일종목 2클럽 등록 불가
- ⑥ 허위서류제출 및 클럽운영에 있어 평가단에 의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본 회를 비롯한 각종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2) 사업참가신청 및 동호회등록

- ①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정보센터 <http://total.koreanpc.kr/regist/index/c102.do> 접속
  - 생활체육메뉴 선택 후 클럽생성 가입신청
- ② 동호회 지원사업은 사업신청에 따른 클럽생성 절차이행 및 승인 진행
- ③ 개설절차: 클럽(동호인) 생성하여 관련문서 첨부하여 체육회 신청



- ④ 동호회 신청서류 제출 및 관련문의 ※ 반드시 사전문의 후 절차이행, 임의 팩스제출 불가
  - ➔ 생활체육팀 조원홍 주임 02)2202-2525 내선 208 / 070-4164-8102
  - 동호인클럽 지원사업 클럽승인은 '20.2.20.(목)이후 일괄승인

3) 신청 제출서류 ※ 신청양식 별첨 (홈페이지 별도 공지사항 확인요망, '20년 2월 중 게시예정)

- 생활체육동호회(클럽) 등록신청서 1부
- 서울특별시장애인 생활체육클럽(동호회) 운영동의서 1부
- 생활체육메뉴 선택 후 교실참가신청 또는는 클럽생성 가입신청 (대표자 날인)
- 생활체육클럽 회원명단 1부 (운영, 일반회원)
- 2020년도 클럽(동호회) 매니저 임명장 1부
- 동호인클럽 고유번호증 1부

### 3.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 가. 사업내용

- 사업기간: 2월 ~ 12월 (※ 운영기간: 4월 ~ 12월)
- 사업목적: 생활체육교실, 동호회, 선수 양성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체육시설 중심의 장애인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 사업내용: 다계층(청소년, 성인, 노인, 여성)/다수준(취미반, 선수반)/장애유형별 강습과 종목별클럽 지원을 통한 종합형스포츠클럽 지원
- 사업형태: 운영단체 \*공공체육시설(장애인체육시설 및 기타 체육시설 연계 등) 예산교부
- 운영기준: 주 2회(1일 2시간 이상 운영), 6개월 이상 운영
- 운영종목: 3개 종목(종목별 소동호회 3개 이상) 이상 운영
- 주최기관: 운영단체(장애인체육시설 및 기타 체육시설)
- 지원사항: 인건비(지도자, 운영요원 수당 등), 용품구입비(용기구 구입 등), 홍보비 등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 나. 지원기준

세부사업	사업구성	사업내용
공공 스포츠 클럽 지원	거점형 스포츠클럽	- 동호회 운영 활성화를 토대로 전문선수반 운영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 신인선수 발굴 가능한 형태 프로그램 운영 - 최소 3개 종목 이상 구성 - 클럽별, 수준별, 장애유형별, 어울림 운영 권장 * 초급반에는 전문선수 등록된 자는 참여할 수 없음 * 중급반에는 전체 생활체육 인원의 50%를 넘지 않도록 구성
	지역형 스포츠클럽	- 최소 3개 종목 이상 구성 - 클럽별, 수준별, 장애유형별, 어울림 운영가능(필요시 선수반 운영가능) - 재가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촉진을 위한 종목별 클럽중심으로 운영

#### 다. 지원항목

목	세목	항목	금 액	지원내용	비고
운영비	일 반 수용비	지도자 수당	일 100,000원 이내	1일 기준 / 수어통역사 등 기준 적용 ※ 지도자자격증 반드시 첨부. 심판자격증 인정불가	
		운영요원 수당	일 50,000원 이내	1일 기준/지도자, 운영기관 소속직원 수당 지급 시 ※ 소속 직원(지도자)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대상자의 주중 근무시간(09시~18시) 이외의 시간과 주말 등 가능	
		클럽대항전 참가	실 비	참가 및 운영비	
		클럽하우스 조성	실 비	클럽하우스 운영	
		홍보물	실 비	현수막, 팸플렛, 포스터 등 ※ 현수막 필수제작	필수
	공공요금 및 제세	보험료	실 비	보험료, 우편요금(홍보물)	
		우편요금	실 비		
	임차료	운동용품	실 비	용기구·장비 임차비	
		차량 및 회의장 이용료	실 비	*담당자 협의(이동차량 및 회의장 등)	
	차량비	유류비	실 비	차량 유류비	
기 타 운영비	의료약품	실 비	소모성 의료약품 구입 ※ 구급함 배치 필수		
여비	국내여비	출장여비	실 비	출장비	
유형 자산	자산 취득비	용품구입비	실 비	장기적으로 활용가능한 용품 구입 가능 *고가의 비활용성 물품 및 개인용품 불가	

# 대회형사업 지원기준 및 항목

## 1. 지역동호인대회 개최지원

### 가. 사업내용

- 사업기간: 3월 ~ 11월 (※ 운영기간: 4월 ~ 10월)
- 주최기관: 가맹단체, 기타 장애인 단체, 서울시 등록단체(구장애인체육회 미설립 지역)
- 지원사항: 서울지역 동호인 및 어울림 대회개최비 지원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엑셀양식포함 별도공지

### 나. 지원기준

세부사업	사업구성	사업내용
동호인대회	동호인대회 (종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맹단체 기준 / 종목별 안배(1개 종목만 운영)</li> <li>- 순수 참가자 50명 이상 (※ 운영진 별도)</li> <li>- 생활체육통합시스템 종목동호회 3개소 이상</li> <li>- 동호인 50명이상 개설 종목에 한함</li> <li>- 지원금의 10% 이상 자부담 확보</li> </ul>
어울림대회	어울림대회 (비장애인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목별 안배 및 장애유형별 안배</li> <li>- 순수 참가자 100명 이상(※ 운영진 별도)</li> <li>- 비장애인 참가비율 30~50% 이내</li> <li>- 지원금의 10% 이상 자부담 확보</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울림풍선배구대회』 운영</li> <li>- 사업형태: 공모</li> <li>- 지원금액: 1개소 1,000만원</li> </ul> </div>

### 다. 지원항목

목	세목	항 목	금 액	비 고
운영비	일반 수용비	심판 수당	120,000원이내	1일 기준 ※자격증 및 심판확인서 제출 - 필수
		기록원 수당	70,000원이내	1일 기준
		운영요원 수당	50,000원이내	1일 기준
		수어통역 수당	100,000원이내	1일 기준 ※자격증 또는 관련기관 재직증빙서류
		진행물품	실 비	대회진행 관련 사무용품, 비품, 경기운영용품 등
		식 비	7,000원	1식 기준 ※자부담 포함 단가조정 가능
		숙박비	40,000원	구 단위 대회 중 2일 이상 대회 운영 시 담당자와 협의 후 지원가능 / 1인 기준 ※ 지원금의 30% 이내
		대회기념품	10,000원	1인 기준 ※지원금의 30% 이내
		홍보물제작	실 비	현수막, 배너, 팸플렛, 포스터 등 * 대회장소 부착물
		시상품제작	실 비	메달, 트로피 또는 그에 준하는 시상물품 (시상금은 편성 불가 / 메달, 트로피 등과 시상물품 중복지급 불가) ※지원금의 30% 이내
	기 타	실 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	보험가입	실 비	상해보험 가입(의무편성)
		우편요금 등	실 비	초청장 등 우편물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임차료	시설이용료	실 비	대회진행과 관련된 시설 이용료
진행물품		실 비	경기용품 외 대회에 필요한 물품 이용료	
차 량		실 비	물품운송을 위한 차량, 의료차량 등 임차	
일반용역비	대행비용	실 비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및 영상 등 일반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협의 후 편성	
기타운영비	의료약품 구입	실 비	약품, 소모성 약품 구입(의료기기 구입 불가)	

## 라. 사업신청 준수사항

- 우리체육회 대회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단체 선정 및 지원  
(전문·생활체육 시장배대회, 종목별어울림대회, 구장애인체육회 지역대회 등 중복지원 불가)
- ※ 지원예산 대비 10% 이상 자치구 또는 기관 자부담 예산 확보  
(사업정산 시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및 서울시 등록단체 주관
  - ※ 동호인클럽, 구장애인체육회 설립지역 장애인단체는 지원 불가
- 서울시 소재(소유) 장소 / 서울 관내지역 참가자 대상 대회 개최
  - 참가자는 서울시소속(활동) 인원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구성
- 사업기간은 2020년 4월 ~ 10월 이내 ※협의가능
  - 2020 장애학생체전(5.19~22) / 전국장애인체전(10.21.~26) 일정을 감안하여 대회 개최계획 수립
- 대회명은 “2020 서울특별시장애인○○(종목명)(동호인)생활체육대회” 로 표기
  - 1) 동호인대회: 1종목 기준 구성
  - 2) 어울림대회: 장애인 및 비장애인참가 유형별대회, 어울림대회 등
- **대회유형별 순수참가인원 및 구성비 준수**
- 생활체육 신규참여자 및 동호인 대상 운영(전문체육선수 등록자 참가 지양)
- 종목별대회는 3개 이상 통합정보센터 등록단체 및 클럽참여 권유
- 참가인원 구분(선수, 성별, 장애유형구분, 자원봉사 등)성실히 작성 기재
- 대회별 홍보물(현수막, 팸플렛 등) 제작 건수 기재
-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체계 구축(구급차량 및 상해보험가입)
  - 보조금 사업 행사관리 및 안전관리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및 응급사항 대응지침 제출필수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신분증 및 복지카드 보완 철저  
(생년월일 외 주민번호 공개불가 / 예외조항: 수당지급, 상해보험가입)